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6항제1호나목 중 “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”을 “사업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 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새로이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(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)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매출액, 투자금액, 고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제20조의3제3항 중 “현금지원이 결정된”을 “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2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로서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

른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
제26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와 요건, 임대료 산정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할 수 있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“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17조”를 “「대외무역법」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2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모두 처분”을 “처분 계획을 제출”로 한다.

제40조제2항제1호 중 “교부”를 “교부(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 한해 위탁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삭 제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 자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 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 치하는 기업을 말한다. 1.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 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가. (생 략)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 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<u>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 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 인 사업</u> 다.·라. (생 략) 2. (생 략) ⑦ ~ ⑭ (생 략)	제19조(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<u>사업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⑦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외국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제20조의2(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새로이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(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)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매출액, 투자금액, 고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제20조의3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25조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3. 삭제

4.·5. (생략)

④ ~ ⑮ (생략)

제20조의3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로서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5.·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④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) ①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6조의2(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와 요건, 임대료 산정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할 수 있다.</u>
제38조(도입자본재등의 검토·확인)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“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·2. (생략) 3.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「 <u>대외무역법 시행령</u> 」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·③ (생략)	제38조(도입자본재등의 검토·확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「 <u>대외무역법</u> 」 제11조제1항-----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2(손자회사의 공동출자 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	제39조의2(손자회사의 공동출자 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

의)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
3. 4. (생략)
5. 공동출자법인이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그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 주식은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모두 처분할 것

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
의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----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제1호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

----- 처분
계획을 제출-----

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·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외국환은행의 장(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탁한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
의 신고·변경신고의 접수 및
신고증명서의 교부

③ ~ ⑥ (생략)

②

1. -----

----- 교부(법 제2조제
1항제4호라목에 따른 외국인
투자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
자진흥공사의 장에 한해 위탁
한다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